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분석관

제정 배경 및 논의 경과

- 우리나라와 미국은 2025년 11월 관세협상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및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발표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내세우며 관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였고, 2025년 2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작으로 2025년 4월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는 25% 관세 적용을 예고
 - 이에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타격을 우려하여 미국과 관세협상을 시작하였고, 2025년 7월 관세인하(25% → 15%)와 대미투자에 합의하였으며, 2025년 11월에는 양국 간 세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및 MOU 체결을 발표
 -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한국의 대미투자 및 비관세장벽 해소 계획, 한미 안보 및 해양·원자력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MOU는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세부 합의사항을 규정

【표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구분	세부 분야	주요 내용
대미투자 (2,000억 달러)	투자대상결정	미국 대통령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 선정 - 투자위원회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 추천
	투자분야	조선·반도체·에너지·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투자일정	2029년 1월까지 투자대상 선정, 실제 자금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분납방식
	투자방식	미국은 전체 사업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와 개별 사업별 '프로젝트 SPV' 설립
	수익배분	간주배분액 ¹⁾ 을 충족할 때까지는 5:5, 이후 1:9(한국:미국)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 한국정부는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 - 투자수익은 전부 한국 기업에 귀속

주: 1) 투자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회계상 기준금액

자료: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25. 11. 14)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이후 국회는 2026년 3월 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2026. 6. 18. 시행)
 - MOU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이행장치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추진

- MOU 체결 이후 약 4개월만인 2026년 3월 여야 합의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표 2]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제정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25.11.14.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최초 발의 - 이후 8건의 의원발의 제정법안 추가발의
2026.2.9.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위’) 구성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16명(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 - 법률안 심사권 부여
2026.3.9.	-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9건의 제정안을 심사,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마련 -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
2026.3.1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26.3.12.	본회의 의결
2026.3.17.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공포(시행일 2026. 6. 18)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이하에서는 2026년 6월 18일 시행 예정인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주요 내용

■ 전략적투자¹⁾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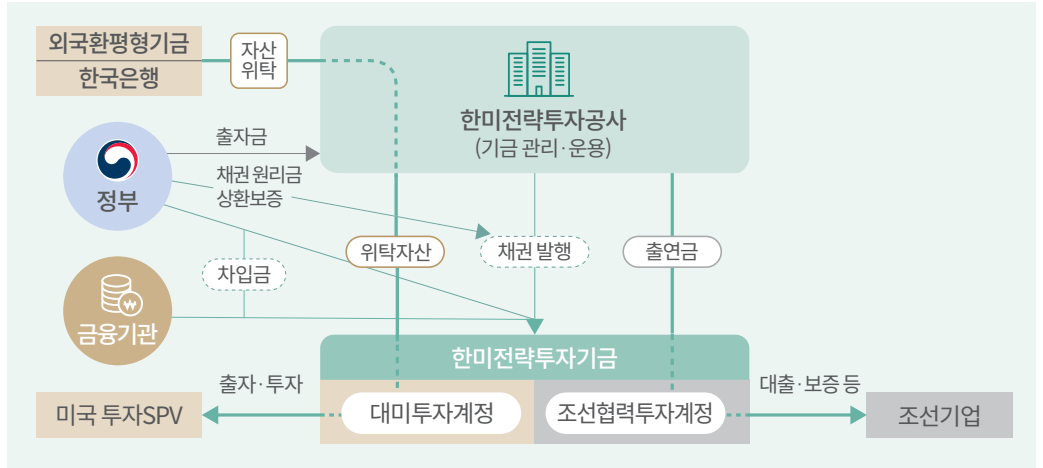
-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및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 기금을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의 재원 중 위탁 외화자산은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공사 출연금은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²⁾³⁾
 -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투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전담기구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운영

- 공사는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법정 자본금 규모는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
 -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전략적투자 지원, 채권 발행등의업무수행

1) 전략적투자는 MOU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의 투자(대미투자)와 조선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의 투자(조선협력투자)를 말함
 2) 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직접 자금을 출자·투자하며 수익이 한국과 미국에 5:5 또는 1:9로 배분되는 반면, 조선협력투자는 대출·보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익이 전부 우리나라 기업에 귀속되는 차이가 있어 자금 운용계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조성자금 및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 그 밖의 재원에 대해서는 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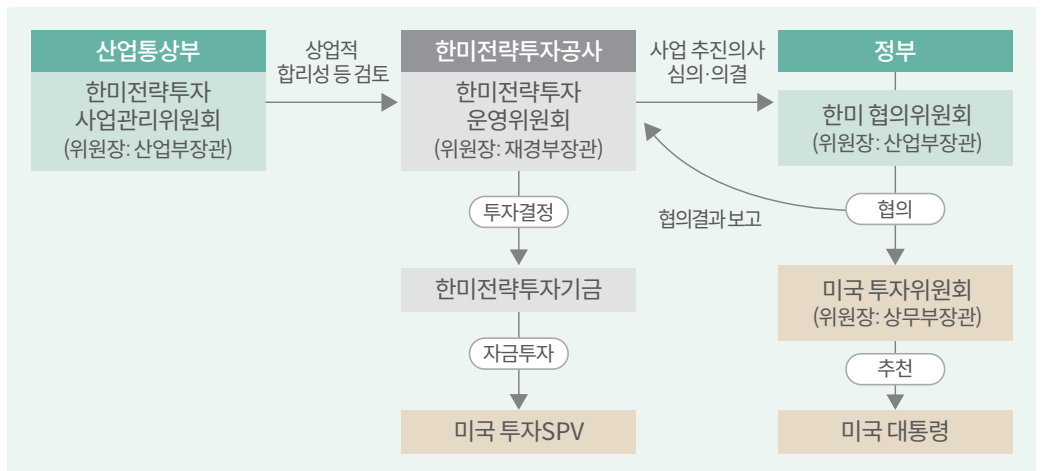
[그림 1] 한미전략투자기금 자원 조성 및 자금집행 구조



▪ 전략적투자 추진을 위한 중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 대미투자 후보사업 발굴·검토 주체와 투자결정 주체를 분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여 내부 견제 및 중층적 검토를 통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도모
 -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며, 투자 후보사업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⁴⁾ 검토 담당(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이하 ‘사업관리위원회’)
 -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며, 재정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 담당(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운영위원회’)
-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사업관리위원회)** 투자 후보사업⁵⁾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검토 후 운영위원회 심의요청 → ②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 → ③ **(정부)** 해당 사업을 미국에 투자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의 제안에 동의 및 사업추진 협의⁶⁾ → ④ **(운영위원회)** 사업추진 확정시 투자결정 및 집행금액·집행시점 등을 심의·의결

[그림 2] 대미투자 거버넌스 체계



4)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MOU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5) 투자 후보사업은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거나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대상으로 제안한 사업

6)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MOU에도 포함된 사항임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략적투자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감독 절차 마련

- (사전보고) 정부는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⁷⁾에 그 내용을 미리 보고
- (정기보고) 정부는 기금의 관리·운영, 전략적투자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전략적투자의 경제·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
- (사전동의)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경우⁸⁾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의견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미투자 추진방향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
- (채권보증동의)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려는 경우 「국가재정법」⁹⁾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제정으로 한미 관세협상 및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감독을 전제로 한 전략적투자 추진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투자는 재정·외환·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사업성 및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일본¹⁰⁾이 관세협상과 연계하여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에너지·첨단기술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

[표 3] 일본 대미투자 프로젝트 내역

구분	대미투자사업 내용	총 규모
1차 투자 프로젝트 ('26.2. 발표)	오하이오주 가스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시설, 조지아주 합성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건	360억 달러
2차 투자 프로젝트 ('26.3. 발표)	테네시주·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펜실베이니아주·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소 등	730억 달러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 참고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함
 8)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제3조제3항)
 9)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0) 일본은 2025년 7월 미국과 관세인하(25%→15%)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